

현장 검토

2005년 3월

www.nyc.gov/charter

NEW YORK CITY
charter
REVISION
COMMISSION

의장이 전하는 메시지



Bloomberg 시장은 2005 현장 개정 위원회(Charter Revision Commission)를 설립했을 때 우리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책무와 한 가지 일반적인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먼저, 시장은 뉴욕시 현장의 개혁이 뉴욕시의 건전한 재정 관행을 향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아래에 실린 기사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방안은 1970년대 뉳욕시 재정 위기 중에 주정부 법안에 의해 책정되었고 2008년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은 뉴욕시의 행정 사법 체계를 개혁하고 정부 기관의 효율성과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Bloomberg 시장은 뉴욕시 현장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조항을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조항의 경우에는 더 이상의 유용성을 상실한 반면, 어떤 조항은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보다 혁명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기회 제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위원회는 이러한 사항을 논의하고자 여러 공공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간행과 함께, 위원회는 5개의 자치구 및 3개의 전문 포럼에서 1차 공공청문회를 발족하였습니다. 포럼에서는 위원회가 검토중인 각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증언이 제시됩니다. 포럼은 현장 개정에 대한 대중 논의를 공지 및 고무하며, 정보에 근거한 다양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공하는 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폭넓은 견해와 옵션의 검토가 현장 개정을 통한 시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합의 도달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부의 개선은 현장 개정 위원회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이 뉴스레터는 뉴욕 시민들에게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 개혁을 통한 시정부 개선 방안에 대한 폭넓은 시민차원의 토론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회의에 동참하시고 제안 사항을 보내십시오. 시정부 개선은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Ester Fuchs, Ph.D.
의장

위원회의 포럼 및 공공청문회 일정

3월 30일, 수요일

Richmond County Juror Assembly Center,
126 Stuyvesant Place, Staten Island
6:00 pm 공공 청문회

4월 4일, 월요일

Hunter College, CUNY
695 Park Ave., West 빌딩 8층
4:00 pm 운영 효율에 관한 전문 포럼
6:00 pm 공공 청문회

Ester R. Fuchs, 의장
Dall Forsythe, 부의장
Stephen J. Fiala, 비서

Robert Abrams
Curtis L. Archer
Lillian Barrios-Paoli
Amalia V. Betanzos
David Chen
Anthony Crowell
Stanley E. Grayson
Mary McCormick
Stephanie Palmer
Jennifer Raab

위원 소개

Dr. Ester R. Fuchs, 공공 관리 및 전략 기획을 위한 시장의 특별 자문으로, 콜롬비아 대학과 버나드 대학의 정치 행정과 교수직 및 도시연구와 정책을 위한 센터 이사로서의 직책은 휴직 중에 있습니다.

Dr. Dall Forsythe 뉴욕 감독교단의 행정 사무관으로, 뉴욕주 및 뉴욕시 교육 위원회의 예산 담당관을 역임하였습니다.

Stephen J. Fiala 리치몬드 카운티의 서기 및 배심원장으로, 시의회 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Robert Abrams Stroock & Stroock & Lavan LLP사의 공동 경영자로서, 이전에는 뉴욕주 법무장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Bronx Borough의 사장 및 뉴욕주 하원을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Curtis L. Archer Rockaway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주식회사의 고위간부이며, 이전에는 맨하탄 북부 중점지대를 위한 중소기업 개발팀의 책임자이기도 하였습니다.

Dr. Lillian Barrios-Paoli Safe Space, Inc사의 사장이자 대표이사로서, 이전에는 뉴욕시 United Way의 수석 부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뉴욕주의 여러 정부기관의 위원도 지낸 바 있습니다.

기타 위원들의 인적 정보 사항은 다음 뉴스레터에 게재될 것입니다.

현장 검토

뉴욕시 재정 안정 확보

1975년, 수년간 지속된 과다 지출과 차입, 부실한 재정 관행으로 뉴욕시는 파산 위기에 당면하였습니다. 계속된 재정 위기는 시공무원의 대규모 정리해고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예산감축을 초래하였습니다. 뉴욕 주정부의 획기적 입법 안의 통과는 뉴욕시로 하여금 파산을 모면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또한 시정부 운영능력에 대한 신용시장의 신임을 회복시킴으로써 시 재정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뉴욕시를 위

한 주정부 재정 위기법(New York State Financial Emergency Act for the City of New York)은 뉴욕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차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FEA로 알려진 이 법안은 뉴욕시의 회계 및 재정 관행의 심각한 문제점을 다

루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FEA조항은 재정 통제 이사회(Financial Control Board)로서, 정부 관리와 민간 부문 대표들로 구성되어 시 재정업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입니다. 한 때는 이사회의 영향력이 시정부 고위 관리 및 입법부서의 권력과 경쟁관계에 있었습니다. 재정 통제 이사회의 영향력은 FEA내에서 이른바 통제 기간이라 불려진 1975년부터 1986년까지가 전성기였으며, 이 기간 동안 뉴욕시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회복기였

으며 철저한 감독 하에 있었습니다. 1986년 이래 FEA의 조항들은 “석양” 시기를 맞았으며, 이는 FEA가 기능은 하고 있었으나 시재정이 튼튼하여 재정 통제 이사회가 감독을 늦출 수 있었던 기간입니다. 위원회의 통제

가 느슨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시는 4년간의 재정 기획 과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시정부는 균형 잡힌 예산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 1억불 이상의 운영 적자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정부의 단기부채 규모도 제한되어 있으며, 시발행 채권 보유자에 대한 시기 적절한 상환을 보장하기 위한 특정 계좌도 유지해야만 합니다. 시정부가 이러한 조항 또는 기타 주요 FEA 조항을 위반 할 시에는, 재정 통제 이사회가 개입하여 통제 기간 중에 행사한 강력한 통제력을 다시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FEA는 2008년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현장 개정 위원회는 조항의 일부를 뉴욕시 현장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는 재정 위기의 암흑기 이후 튼튼한 시 재정을 지켜온 뉴욕시의 건전한 재정관리와 회계관행을 지속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FEA는 뉴욕시의 파산을 막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뉴욕시 재판소를 위한 조정자

많은 뉴욕 시민들에게 행정 재판소는 시민법의 형평성을 상징하므로 지방 정부에 대한 시민의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택시 기사들의 무례함에 당하거나, 나이트클럽의 소음에 잠이 깨고, 억울한 주차위반 티켓을 받았을 때 행정 재판소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재판소는 시민법 위반, 자격증 거부에 대한 소송, 시공무원 처벌, 부동산 보유세 및 상업세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위해 시민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들 재판소가 관장하는 사안의 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분쟁을 공정하고 평등하며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재판소에는 주차 위반 사무국, 환경 통제 이사회, 행정재판 및 청문회 사무소,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가 포함됩니다.

지난 30년간 행정 재판소는 행정 법 기관이 성장하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그 수가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기관의 운영정책 관리 및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제도는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 사법 조정자의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수년간 뉴욕시 행정 재판소의 조정자를 선임하는 사안이 시정부의 지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조정자는 재판소의 성과표준을 감독하고, 예산 우선순위를 책정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조정자 직위 마련의 목적은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하고 시기 적절한 정의 실현을 보장함으로써 뉴욕시 행정 사법 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추가 정보

위원회 웹사이트에는 현장 개정 과정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공공청문회 원고, 위원회의 중간보고서 및 이전 현장 위원회의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NYC.GOV/CHARTER입니다.

위원회에 연락하시려면 전화(212-676-2060) 및 팩스(212-676-2069)로 하시면 됩니다.

우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NYC Charter Revision Commission
2 Lafayette Street 14th floor
New York, NY 10007